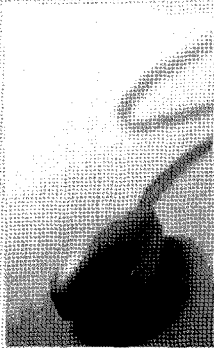




— 산업정책



1.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2. [알면 보이는 중소기업] 재택창업시스템
3. 경기도, 중소기업 신용관리 지원 강화
4. 경영악화 중소기업 세금 징수유예 확대
5.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안 저율질
6. 공정거래조정원, 무료법률상담 확대
7.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 면적제한 완화
8. '허위자료 제출 중소기업에 과태료 부과
9.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10. 폭우피해 중소기업에 긴급 복구자금 지원
11. 사업소득 성실신고확인서 고시
12.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쉬워져
13.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14. 뿌리산업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 강화
15. 중소기업 보증보험료 부담 크게 준다
16. 중소기업 매출 채권보험제도
17.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 일원화
18. 중소기업 인력 빼낸 대기업에 불이익 준다
19. 규제개선으로 이런것이 달라졌어요

1.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업체가 밀린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11곳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범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하게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주지시켜 달라고 협조요청 했다.

공정위는 또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93개 대기업에 대해 3만2천940개 소속 협력사에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2. [알면 보이는 중소기업] 재택창업시스템

“법인설립 온라인으로 해결하세요”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이 창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지난해 2월 개통한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해 설립한 법인의 수가 2천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재택창업시스템이란 회사설립과 관련해 정부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사설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전산망을 통합 연계한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16개 시중은행과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등기 관련 기관에 접속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창업비용 절감은 물론 회사설립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기청은 서비스 시작 후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상 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험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컨설팅 등 각종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해 시스템 이용자가 법인설립 이후 궁금해 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이병권 과장은 “재택창업시스템은 더 쉽고 저렴하게 법인을 설립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며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용률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법인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재택창업시스템 홈페이지(www.startbiz.go.kr)를 이용하면 되며 콜센터 1577-5475에 전화하면 법인설립에 관한 필요한 각종 정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이 서툰 사람에게는 원격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 법인설립 절차·기간 변화

2009년도

절 차	기 간
① 상호검색	1
② 법인인감 제작	1
③ 자본금 확인	1
④ 법인등록세 납부	1
⑤ 법인설립등기 신청	2
⑥ 사업자등록 신청	6
⑦ 4대 사회보험 가입	1
⑧ 취업규칙 신고	1
8단계	14일

2011년도

절 차	기 간
□ □ 상호검색	0
① 법인인감 제작	1
② 온라인 처리	4
2단계	5일

3. 경기도, 중소기업 신용관리 지원 강화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신용도 향상을 위해 무료 신용점검 등 신용관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출기업협회, NICE 신용평가정보㈜가 이날 중기센터에서 중소기업 신용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신용상태 무료 열람 및 공공입찰 신용평가 할인, 기업정보 및 통계 정보교환, 신용평가 교육에 협력하고 실무 협의회를 운영한다.

도내 중소기업은 분기별 신용평가 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자사의 신용상태 열람을 할 수 있는 예비평가 보고서를 무료로 받게 된다.

경기중기센터와 NICE 신용평가정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업들의 신용 등급 및 진단 내용을 상담해주는 ‘기업신용등급 무료진단 이벤트’를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기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또는 경영정보팀(☎031-259-6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4. 경영악화 中企 세금 징수유예 확대



재해나 파업,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연기 및 징수유예 혜택이 확대된다.

또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인 더블딥 공포가 확산되는 시점에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일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본청 등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승인했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사유를 천재지변, 화재, 폭발사고, 봉

괴, 도난 등으로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와 사업경영이 곤란한 정도의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로 명문화했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치료로 인해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재해지역으로 지정됐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때 ▲직원 70% 이상에 두달 이상 임금 체불된 때 등의 경우도 징수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일선에서 납부연기나 징수유예에 따른 책임문제로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관련 규정이 명확해져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하지만 징수유예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납부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기간은 종전대로 9개월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납세담보 제공 요구한도를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해 체납에 따른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세금 환급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됐을 때 이를 한시라도 빨리 추징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5.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안 저울질

대기업들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통한 편법 증여에 대해 정부가 증여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하는 5개 방안을 놓고 타당성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가지 방안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이다.

이같은 방안은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세법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한 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시한 것으로 정부는 이런 과세 방법 중 1개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막판 조율 중이다.

우선 과세 대상자는 수혜기업에 일정 기준(예: 3~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과세 대상은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와 그의 배우자 및 친족으로 한정된다.

대상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과세 요건으로는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비율이 일정비율(예: 3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은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말에 수혜기업의 지배주주 등에 대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물량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이 수혜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수혜기업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방안이다.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 대신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수혜기업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일감을 공급해주는 기업이 수혜기업에 몰아준 물량에서 발생한 재화·용역구입비 등에 비용의 일부(예: 10~20%)에 대해 손금불산입을 하는 가능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시점인 2004년부터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과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도 한 교수가 제시한 5가지 과세방안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수렴됐다”며 “5개 방안 중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한 가지 방안을 택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6. 공정거래조정원, 무료법률상담 확대

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작년 3월9일부터 중소기업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 지금까지 525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최근 들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기존에 공정거래와 가맹사업분야에 대해 6명(변호사 4명, 가맹거래사 2명)으로 운영하던 서비스에 하도급 분야를 추가해 3개 분야 10명(변호사 6명, 가맹거래사 4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와 전화(1588-1490)를 통해 상담방법과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사전에 예약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 中企 산업단지 입주 면적제한 완화

지식경제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편의 증진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 31개의 규제 개선과제 해결을 끝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산업단지내 관리기관이 소유한 일부 산업

용지에 대해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기존 1천650㎡ 이상에서 900㎡ 이상으로 낮춰 중소기업이 쉽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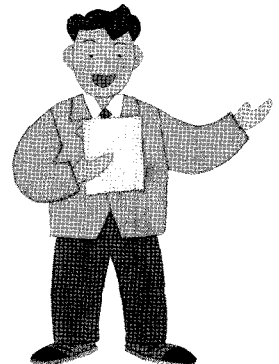
또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하고 있으며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 등으로 모두 둘러싸여 공장 증설이 불가능한 기존 공장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 공장증설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주유소의 주유기 또는 LPG미터 등 계량기기의 검정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주유소 당 연간 평균 8만원의 경비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지경부는 주장했다.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인 것도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모바일 정보기기 문자입력방식, 김치냉장고 저장용기, 가전제품 공용리모컨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거나 해결했다.

지경부는 앞으로도 30개 가량의 규제개선 과제를 찾아내 풀어나갈 계획이다.



8. '허위자료 제출 중소기업'에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사회적기업에 중소기업 지위가 부여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정책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측은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사회적기업도 일반적인 중소기업자의 지위에서 중소기업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현재 전국에 532개 등록돼 있지만, 그 중 약 60%에 달하는 비영리법인은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제까지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중소기업 읍부즈만에게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발굴 및 개선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육성계획 매년 3월까지 국회 제출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지정·운영 ▲중소기업 주간 행사 법정행사로 격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9.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아울러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다.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 노후를 위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 이번 제도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축소되고 국민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노사 측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일

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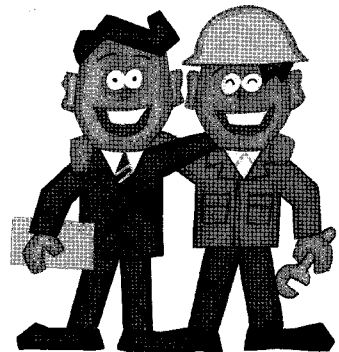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제도는 100세 사회,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라며 “사업장 현장 지도를 통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 폭우피해 중소기업 긴급 복구자금 지원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6일부터 계속된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재해 복구 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335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침수나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 규모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은 이번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 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지금을 총 25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한도 내에



서 연 3%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 중소기업은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일반보증보다 낮은 요율(0.5% 고정)을 적용한 특례 보증을 실시한다. 재해기업의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침수 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복구 지원을 위해 업체당 기술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하고, 최대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복구를 위한 파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도 폭우 피해기업 돕기에 신속히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대책단'을 긴급 구성했다. 대책단은 12개 지역본부와 96개 협동조합을 통해 전국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공제기금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수해기업의 현장복구에 인력을 지원하고, 정부에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중앙회 내에 설치된 공제기금도 폭우 피해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이달 30일까지 지원을 신청하면 6개월간 대출금 및 이자 상환기간 유예와 대출이자율 인하(2.15%~4.1%)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 및 문의 : 중소기업청(☎042-481-4388),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70~7)

11. 사업소득 성실신고확인서 고시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가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때 경비를 부풀리거나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계상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성실신고제도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확인받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과정을 거쳐 만든 이번 재정부 고시에선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탈루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계상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가령 지출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전수 조사해 적격증빙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항목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했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으면

산업정책

실제 근무했는지를 확인하고, 가정용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해 차량유지·관리비가 변칙적으로 계상됐는지도 따져보도록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등 성실신고제도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 또는 8월 초에 공포할 예정이다.

12.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쉬워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을 해당 국가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 사항을 해당 국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 체류 중에 지방고용센터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2010년 하반기 95건, 2011년 상반기 175건에 불과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경력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의 근무 경력을 토대로 현지 취업과 창업활동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3.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 각 부문별 감축목표 확정안(%)

산업*	전환	수송	건물	농림어업	폐기물	공공기관	국가전체
18.2	26.7	34.3	26.9	5.2	12.3	25	30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줄여나가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중 세부 실행방안이 마련되고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보고해 확정했다.

이는 2009년 11월 확정·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세부안으로,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8억1천300만 CO₂eq(6개 온실가스를 CO₂로 환산한 양)t(톤) 대비 30%인 2억4천400만 CO₂eqt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번 확정안은 지난달 말 발표한 정부안의 틀을 유지하되 기업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우선 산업별 감축목표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산업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5.2% 등 기존 정부안이 유지됐다. 다만 정부는 전기·전자(당초 61.7%) 및 자동차(당초 31.9%) 업종은 에너지 감축목표와 불소계 세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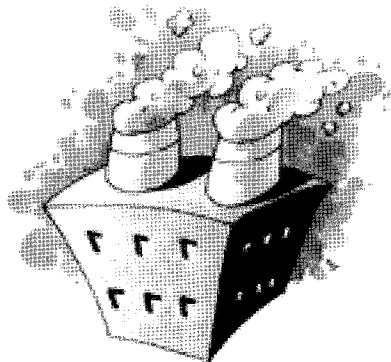
및 냉매 사용 감소에 따른 비에너지 감축목표를 분리해 표시했다.

이는 이들 업종의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돼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비에너지 회수 책임은 현 자원순환법령 등에 따라 폐기물 부문이 담당토록 하되 추후 주체 변경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멘트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슬래그시멘트 사용 확대는 2012~2013년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 단기 감축율을 2012년 0.5%에서 0.3%로, 2013년 0.9%에서 0.5%로 조정했다.

수송·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됐다는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감축안과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대책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471개 업체별로 연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일정량(연 12만5천 CO2eq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별 감축률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기업의 혼란이 없도록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4. 뿌리산업 中 小 애로기술 지도 강화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통한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지도사업에 적극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금형·주조·소성가공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애로 기술지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수탁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 대기업 완성품의 품질제고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대기업 전문인력과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 지원단이 직접 뿌리산업 분야 수탁 중소기업 작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진단과 기술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차 수탁기업에 대기업 담당자가 직접 원하는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

하고 관련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해당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기업등과 협력관계에 있는 2~3차 이하 수탁기업으로 뿌리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대기업·중견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10~20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된 컨소시엄의 중소기업체에는 최종 열흘간 전문가가 과견돼 현장진단과 기술개발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2~3차 등 하위 협력사의 구성비중과 대기업의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면서 “특히 이 사업은 기술개발 방향을 위탁업체인 대기업·중견기업 측과 협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체 기술경쟁력 강화와 대기업 제품 품질 향상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767)

15. 中企 보증보험료 부담 크게 준다

앞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의 이행보증서발급 비용이 대폭 줄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배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6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토대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공제사업 추진을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제품납품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이 납품가격의 최고 7%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공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보증수수료가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떨어지고 보증서 발급 기간도 단축될뿐더러 복잡하고 까다로운 각종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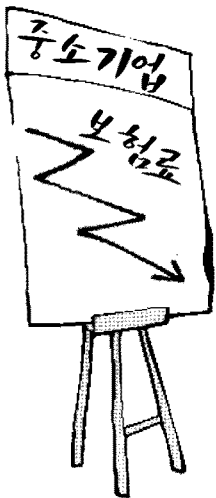
중소기업연구원이 실시한 2008년 10월 ‘협동조합 이행보증공제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로 보증서를 발급받는 업체수는 줄잡아 약2만5천개에 달하고 건수로는 연간 43만건에 3조4천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는 이 보다 발급업체수나 발행액 규모도 각각 25%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공제조합은 설비, 정보통신, 전기, 건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 50여개가 있으나 유일하게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제조합만 없었다.

특히 중소기업체들의 경우 각종 보증보험서를 발급 받는 곳도 서울보증보험의 독점체계로 운영돼 과중한 보증료 부담은 물론 잦은 보증서 발행거부 등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납품차질 등 불이익과 불만이 증폭돼 왔다.

배영식 의원은 “중소제조업을 위한 보증기관이 전무했다는 자체가 그만큼 중소기업이 금융부문에서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증거”라며 “중앙회 공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보증료의 대폭 경감은 물론 수조원의 출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이 다시 뭉칠 수 있고 상호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6. 中企 매출채권보험제도

中企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들이 외상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기준은 직전사업연도 연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으나 중소기업간 차별을 해소하기위해 이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채권의 80%까지 최대 20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등)도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를 막기 위해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의 비중은 20% 이하로 제한해 운용하기로 했다.

산업정책

중기청은 보험 규모도 지난해 6조원에서 올해 6조 4천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가입 기업을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매출채권보험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이나 전국 단일전화(1588-6565)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다.

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입력 시 발급기관을 거래은행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의 발급 수수료가 오프라인(1만원)보다 건당 2천~4천원 적은 이점이 있고, 구매확인서는 전자문서보관소에 5년간 보관돼 언제든지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다.

17.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 일원화

이달부터 무역업체의 구매확인서 발급절차가 간편해지고 발급비용도 저렴해진다.

한국무역협회는 그동안 외국환은행 창구와 온라인으로 이원화됐던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달부터 온라인에서만 이뤄진다고 최근 밝혔다. 구매확인서는 해외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수출업자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혜택, 수출실적 인정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은 관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무역업체가 직접 은행창구를 찾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없애고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에서부터 국세청 증빙자료 제출까지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통일했다.

무역업체는 국가전자무역포털인 'uTradeHub'(www.utradehub.or.kr)에 접속해 구매확인서 메뉴

18. 中企 인력 빼낸 대기업에 불이익 준다



최근 일부 대기업으로 중소기업 숙련기술자가 이동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이 금형분야에 진입하면서 핵심인력 이탈로 인한 중소 금형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대기업의 경력직 위주 채용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분야 등의 기술인력이 대기업으로 빈번하게 이동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대기업으로 이직은 대·중기간 근로조건 격차 등에 의한 것으로 일정부분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대기업 또는 동종 중소기업 이직사례 중에는 불공정 소지가 의심되는 건이 상당수 있는바, 이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기술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유입 체계 구축과 장기근무여건 조성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8.17(수) 경제정책조정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및 법집행 강화를 강화한다.

기업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기술인력의 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집행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반영하여 부당 유인·채용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또한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에 관한 불공정행위 심의결과를 정부 물품구매 입찰 등 관련 제도에 반영한다. 조달 물품 제조·구매 입찰에 관한 적격심사 기준과 물품 제조·구매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추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기업의 평가 기준에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를 포함한다.

중소기업청 R&D 지원과제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 적용 추진할 계획이다.

업종 조합 등의 부당한 인력채용을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개요 >

구분	주요 내용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인·채용의 목적 및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용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관련 법령 등 종합 고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조치 : 계약조항 삭제, 행위 중지명령, 수명사실 공표(공정거래법 제24조) 과징금 부과 :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 곤란시 5억원 이내(공정거래법 제24조의2)

둘째,
기술보호상담센터 및 기술자료 임치제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보 및 기술인력
유출 보호를 강화한다.

기술보호상담센터에서 기술·인력 유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법률상담, 서류작성 및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고

* 보안, 법률, 수사 분야 등의 전문가 Pool(100명)을 통해 지원('11년 250개 기업)

지재권 보유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분쟁중인 경우 직접대리 및 침해소송을 민사소송비용 1천만원 한도에서 지속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개발기술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청 R&D 지원과제에 대해 임치제 이용을 의무화하고, 향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임치금고를 연차적으로 확충('11년 1,000개)하고, 온라인을 통해 기술자료 전송 및 계약이 가능하도록 임치서비스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 주요 전문기업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확산하고

* 3개 국립공과와 벤처·이노비즈 협회간 산학협약

MOU 체결 추진, 운영성과를 토대로 타 기업이나 학교로 단계적 확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취업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및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연구 전문인력 공급 확대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 및 민간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인력을 확대 공급하고, 신성장 분야 전문 기술·기능인력 양성하고 중소기업연구소 등에 근무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편입 여건 개선 및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중소기업 연구인력 및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를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

현행	개선(안)
중소 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자(연구전담요원)	중소 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자(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시 우대 지원한다.

우선, 국내여객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사용료를 50% 감면 추진하고, 향후, 고궁·농원, 국립공원, 휴양림, 체육시설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등 근로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산업단지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주체를 사업주 조합 외에 산단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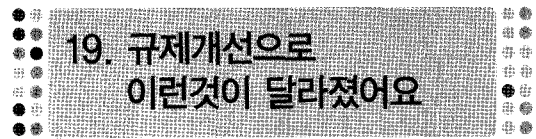
산업단지 녹지구역의 도시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 외에 직장 어린이집도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향후 근로자에게 소속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중소기업 실정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확대 등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준하 사무관(2150-4534)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김광재 사무관(042-481-4394)



- 상반기 지식경제부 규제개선 실적 발표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금년도에 국민편의 증진 및 기업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1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상반기까지 31개의 과제를 완료 하였음

특히 금년도 상반기는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을 위해 입지환경 개선, 인증·안전관리 제도 간소화, 일반서류의 국제특송 허용 등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한편, 모바일기기 문자입력 방식 표준 마련 등 국민 생활편리성 증진에도 주력 하였으며, 주요 추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입지환경을 개선

산업정책

❑ 일정요건을 갖춘 대학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취업-R&D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 산업단지내 관리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산업용지에 대해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하향(기존 1,650㎡ 이상 → 900㎡ 이상)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

❑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하고 있으며,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 등으로 모두 둘러싸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기존 공장('08.12.31 이전 설치)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의 공장증설을 허용

❑ 유사 인증제도간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검사·검정,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관련기업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경영 활성화 촉진

❑ LED 조명 분야의 KS인증(임의규정)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인증(의무규정)의 안전시험 항목의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KS인증 기간(1개월) 단축 및 비용(50%) 절감

❑ 주유소(주유기 및 LPG미터) 계량기 검정주기를 완화(2년→3년)하여 주유사업자의 부담 경감

* 주유소 당 연간 평균 약 8만원의 경비절감

❑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30일 → 20일) 및 기간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인정

하여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제고

❑ 그동안 국제신서송달 규제로 묶여 있던 일반서류에 대하여 국제특송을 허용하여 한-EU FTA 협정이행 및 우편제도 선진화를 추구

* 국제서류의 신서송달 예외를, 현재 상업용 서류(수출입, 외자·기술도입, 외국환 관련)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특송을 이용한 일반적인 서류(유학서류, 법률서류 등) 송달까지 확대

❑ 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항에 대한 생활·산업표준화와 계량기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리성 제고

❑ 민·관 합동 「생활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10.4)하여 시급성과 표준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 정보기기 문자입력방식', '김치냉장고 저장용기', '가전제품 공용리모콘'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 추진('09년부터 '11.상반기까지 57 개과제 발굴, 27개 과제 완료)

❑ 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종류별 및 위반 횟수별 차등)하여 국민부담 경감

* 일불적 100만원 → 10~100만원

앞으로도 지식경제부는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30건)를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담완화와 편의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임

- 한편, MB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촉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임
- 특히, 최근 산업융합이 본격화되고 융합신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것임

